

2021년도 제30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10. 29.(금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 백대용(분과위원장), 박재화, 송수현, 오영주, 이성엽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 **의결사항** ※ 안건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0건(안전번호 제2021-150270호~150329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순번 1번~60번 {‘◇◇◇◇◇◇◇’사이트의 ‘[중점](영화)둔(2021)’ 등 60건의 게시물}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영화)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순번 1번~60번 {‘◇◇◇◇◇◇◇’사이트의 ‘[중점](영화)둔(2021)’ 등 60건의 게시물}은 모두 저작권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저작물의 복제물로서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영화)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이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C 위원: 본건 심의안건은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고, 개별 이용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원도 존재하지 않아 보이며, 저작권자가 모두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저작물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의 유포는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됨. 특히, 이번 안건들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영상저작물로 보호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그러므로 본건 심의안건들은 불법복제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심의안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되어 있는 안전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D 위원: 금번 심의안건은 ‘◇◇◇◇◇◇◇◇’ 사이트의 ‘[중점](영화)뚝 (2021)’ 등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영화)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E 위원: 본 심의 안건 60 개는 ‘뚝’ 을 포함하는 최신 영화 여러개를 무단으로 불법 복사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입니다. 이는 관련한 공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정권고가 필요합니다.

2021년 제30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0. 29.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송수현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